

제주형 주거·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 『우리 읍리 배움 뜨락』 업무협약서

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제주시니어클럽(이하 “시니어클럽”이라 한다),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(이하 “개발공사”라 한다)는 『그치 행복한 뜨락』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서는 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휴공간(이하 “유휴공간”이라 한다.) 등을 활용하여 제주도민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사항)

- ① “진흥원”, “시니어클럽”, “개발공사”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상호협력한다.
 1. “진흥원”의 역할
 - 가.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
 - 나.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제주도민 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력
 2. “시니어클럽”의 역할
 - 가. 유휴공간의 유지관리 인력 파견 및 운영
 3. “개발공사”의 역할
 - 가. 유휴공간 제공 및 관리비 부담
 - 나. 유휴공간 내 필수 비품 제공(빔프로젝트, 책상, 의자 등)
- ② “진흥원”, “시니어클럽”, “개발공사”는 각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“그치 행복한 뜨락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③ 구체적인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.

제3조(효력발생 및 기간)

- ① 협약기관이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 사항의 발생에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한다.
- ② 본 협약의 효력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등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시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4조(상호협력 및 비밀유지의 의무)

- ① 협약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 필요시, 협약기관은 협의를 거쳐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에 의거한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, 개인정보 또는 영업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, 이는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의 해지)

협약기관이 본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, 상대방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, 본 협약의 효력기간 내에도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, 서명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5월 14일

(재)제주평생교육
장학진흥원

제주
시니어클럽

제주특별자치도
개발공사

원장



관장



사장

